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969호(號) 1930년(昭和 5) 3월 29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9호(號)

조선총독부철도, 사설철도,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·私設鐵道·軌道竝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 제1조(條)에 의(依)한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 및 특종취급사항(特種取扱事項)을 1930(昭和 5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과 같이 정(定)함.

1928(昭和 3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52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, 사설철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규칙[朝鮮總督府鐵道, 私設鐵道竝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規則] 제1조[條]에 의[依]한 연대운송[連帶運送]의 범위[範圍] 및 특종취급사항[特種取扱事項])는 본(本) 고시(告示) 시행(施行)과 동시(同時)에 이것을 폐지(廢止)함.

1930(昭和 5)년 3월 2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여객(旅客), 수·소하물(手·小荷物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 및 특종취급사항(特種取扱事項)

제1조(條) 조선총독부철도, 사설철도,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·私設鐵道·軌道竝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에 의(依)하여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와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철도(鐵道), 궤도(軌道) 및 항로(航路)의 명칭(名稱) 및 그 접속정거장(接續停車場), 취급종별(取扱種別), 특종승차권(特種乘車券)의 종류(種類), 특종취급사항(特種取扱事項)은 별표(別表)와 같이 함.

제2조(條) 여객(旅客), 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및 여객부수소하물(旅客附隨小荷物)의 연대수송(連帶運送)을 해야 할 역소(驛所)는 별도(別途)로 이것을 정(定)함. 단(但) 아래[左]의 역소(驛所)에서는 연대수송(連帶運送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1. 다른 철도(鐵道), 궤도(軌道) 혹은 항로(航路)와의 접속(接續) 역소(驛所)에서는 당해(當該) 철도(鐵道), 궤도(軌道) 또는 항로(航路)에 대한 연대수송(連帶運送)
2. 간이역(簡易驛) 및 정류소(停留所)

제3조(條)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와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항로(航路)가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 간(間)에 개재(介在)할 때는 조선총독부철도선(朝鮮總督府鐵道線) 간(間)에서 당해(當該) 항로(航路)를 경유(經由)하여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취급(取扱)함.

제4조(條)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와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취급(取扱)을 하는 사설철도(私設鐵道)로서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것은 그 상호(相互) 간(間)에서 조선총독부

철도선(朝鮮總督府鐵道線)을 경유(經由)하여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취급(取扱)을 하는 사설철도(私設鐵道)가 연속(連續)하지 아니하는 수개(數箇)의 선로(線路)가 있는 경우 그 상호(相互) 간(間)에서도 또한 동일(同一)함.

제5조(條) 제3조(條) 및 제4조(條)의 경우(境遇)에 있어서 취급종별(取扱種別)의 제한(制限)은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와 관계(關係) 철도(鐵道) 또는 항로(航路)와의 간(間)에 있어서 취급제한(取扱制限)의 범위(範圍) 내(內)로 함.

철도(鐵道), 궤도(軌道), 항로(航路) 명(名)	접 속 역(接續驛)	취 급 종 별(取扱種別)	특 종 취 급 사 항(特種取扱事項)
1. 조선철도주식회사(朝鮮鐵道株式會社) 경남선(慶南線) 경북선(慶北線) 충북선(忠北線) 황해선(黃海線) 함남선(咸南線) 함북선(咸北線)	마 산 선(馬 山 線)(마 산[馬 山]) 경부본선(京釜本線)(김 천[金 泉]) 경부본선(京釜本線)(조치원[鳥致院]) 경의본선(京義本線)(사리원[沙里院]) 함경본선(咸鏡本線)(함 흥(咸 興) 함경본선(咸鏡本線)(고무산[古茂山])	여객(旅客),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및 여객부수소하물(旅客附隨小荷物)	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(依)하여 신천온천행(信川溫泉行) 할인왕복승차권(割引往復乘車券)을 발매(發賣)함
2.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(朝鮮慶南鐵道株式會社)	경부본선(京釜本線)(천 안[天 安])	여객(旅客),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및 여객부수소하물(旅客附隨小荷物)	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(依)하여 온양온천행(溫陽溫泉行) 할인왕복승차권(割引往復乘車券)을 발매(發賣)함
3. 개천철도주식회사(价川鐵道株式會社)	경의본선(京義本線)(신의주[新義州])	여객(旅客),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및 여객부수소하물(旅客附隨小荷物)	
4.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(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)	경 원 선(京元線)(철 원[鐵 原])	여객(旅客),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및 여객부수소하물(旅客附隨小荷物)	
5. 신흥철도주식회사(新興鐵道株式會社)	함경본선(咸鏡本線)(함 흥[咸 興]) 조철함남선(朝鐵咸南線) 함흥(咸興), 함남(咸南)·신흥(新興) 간(間) 경유(經由)	여객(旅客),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및 여객부수소하물(旅客附隨小荷物)	
6. 함평궤도주식회사(咸平軌道株式會社)	호남본선(湖南本線)(학 교[鶴 橋])	여객(旅客),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및 여객부수소하물(旅客附隨小荷物) 단체(團體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하는 차량류(車輛類), 가마[轎子]는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	
7. 조선우선주식회사(朝鮮郵船株式會社)	청 진 선(淸津線)(청 진[淸 津]) 도문동부선(圖們東部線)(웅기[雄基])	여객(旅客),수하물(手荷物), 소하물(小荷物) 왕복승차선권(往復乘車船券)은 발매(發賣)를 하지 아니함 요상액표시(要償額表示) 수(手)·소하물(小荷物) 및 소하물(小荷物)로서 물(物)에 담긴 활어(活魚), 귀중품(貴重品), 동물(動物), 차량류(車輛類), 사체(死體), 가마[轎子]는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	1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일본(日本: 각[各] 식민지[植民地]를 포함[包含]함) 관리(官吏), 승려(僧侶), 선교사(宣敎師)에 대하여 특등(特等)에 한(限)하여 2할(割)을 저감(低減)함 2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일본(日本) 육해군(陸海軍) 폐병(癈兵)[1](보조인 [附添人]을 요[要]하는 것일 때는 1인[人]에 한[限]함)에 대하여는 각(各) 등(等) 운임(運賃)을 2할(割) 저감(低減)함 3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단체여행자(團體旅行者)에 대하여 보통운임[並等運賃]을 20인(人) 이상(以上) 1할(割)을 저감(低減)함 4 단체운송(團體運送)의 경우(境遇)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무임급감독자(無賃扱監督者)를 인정(認定)하지 아니함
8. 아와국공동기선주식회사(阿波國共同汽船株式會社)	경 인 선(京仁線)(상인천[上仁川])	여객(旅客), 수하물(手荷物) 왕복승차선권(往復乘車船券)은 발매(發賣)를 하지 아니함 요상액표시(要償額表示) 수하물(手荷物)은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	1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조선총독부(朝鮮總督府) 및 관련청(關聯廳)의 관리(冠履)에 대하여는 각(各) 등(等) 운임(運賃)을 2할(割) 저감(低減)함 2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외교관(外交官)과 영사관원(領事館員) 및 그 가족(假足)에 대하여 1,2등(等) 운임(運賃)을 1할(割) 5푼[分] 저감(低減)함 3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일본(日本) 육해군(陸海軍) 폐병(廢兵)(보조인[附添人]을 요[要]하는 것일 때는 1인[人]에 한[限]함)에 대하여는 각(各) 등(等) 운임(運賃)을 2할(割) 저감(低減)함 4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신관(神官), 승려(僧侶), 선교사(宣敎師)에 대하여 1,2등(等) 운임(運賃)을 2할(割) 저감(低減)함 5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단체여행자(團體旅行者)에 대하여 3등(等) 운임(運賃)을 20인(人) 이상(以上) 1할(割), 40인(人) 이상(以上) 2할을 저감(低減)함 6 단체운송(單體運送)의 경우(境遇) 사(社) 항로(航路)에서는 무임감독자(無賃監督者)를 인정(認定)하지 아니함

9. 기타규수상선주식회사(北九州商船株式會社)	경부본선(京釜本線)(부 산[釜 山])	여객(旅客), 수하물(手荷物) 요상액표시(要償額表示) 수하물(手荷物)은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	1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(依)하여 할인(割引) 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 및 단체승차권(團體乘車券)을 발매(發賣)함

1) 부상 등으로 불구가 된 병사